

〈개 요〉

- 제 목 : 서울의 노인일자리 발전과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
- 일 시 : 5월 31일 금요일 오후3~5시
- 장 소 : 전태일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프로그램 진행〉

시 간(120분)	주 요 내 용
15:00~15:10 (10분)	개회사 문중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5:10~16:00 (50분)	국내외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용 실태 신희균 (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차장)
16:00~16:40 (40분)	서울의 노인일자리 실태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보완 방안 토론 1.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 토론 2.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14:40~17:00 (20분)	청중 질의/응답
17:00	폐회

〈목 차〉

[발제문]

국내외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용실태 5

신희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차장)

[토론문]

서울의 노인일자리 실태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보완 방안 35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 41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발 표 문〉

국내외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용 실태

신희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차장)

국내외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한 이해

2019.5.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신희균

CONTENTS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2. 추진성과 및 한계
3. OECD 국가의 고령자 지원정책

영화 '인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 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제 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 제 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 11조(고용과 소득보장)
 - 제 14조(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사업 추진 배경

1990년대 말 이후 노인들은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기업이 채용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사업 명칭 변화

- (2004~2014) 노인일자리사업
- (2015)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 (2016~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예산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활동성격	
노인 사회활동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27만원 9~12개월	봉사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만65세이상	월10만원 6개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만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54~59.4 만원 10~11개월 <small>주휴,연차수당별도</small>	근로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연230만원	
	인력 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1인당 15만원		
	시장형 (취창업)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만60세이상	45만원 3~3개월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 경상보조		설립비용 최대 3억이내	
		기업 연계형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민간 경상보조		1인당 최대 250만원	

활동성격에 따른 사업유형 구분



활동 성격에 따라 봉사와 근로 형태로 나뉨

**노인 사회활동
(봉사형태)**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

**노인일자리
(근로형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예산구조에 따른 사업유형 구분



예산구조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나뉨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자체 예산지원)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예산미지원)

재능나눔 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사업유형별 소개 순서



01_공익활동

- 정의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사업유형	사업내용
노노케어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 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 등 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01_공익활동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운영기간 : 연중(12개월), 9개월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월 27만원
- 활동기관 :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

01_공익활동

○ 선발기준

구 분		배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소득(60점)	60점
	부부가구 소득(60점)	
참여경력	신규 참여 여부	5점
세대구성	경제력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15점)	15점
	독거노인가구(10점)	
	부부노인가구(2명) (5점)	
	경제력 있는 가족 동거(0점)	
활동역량	보행능력(10점)	20점
	의사소통(10점)	

01_공익활동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01_공익활동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학교 유해환경 지킴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 보호, 사고 발생 우려 지역 안전 예방 캠페인 등 실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내 급식실에서 영양사 업무보조, 배식, 환경정리, 식사예절 지도 활동 수행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및 하교길을 동행하여 사고발생 방지 및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 수행
실버 도슨트	박물관 및 전시관 관람안내, 해설 보조 활동 수행

02_재능나눔활동

- 정의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재능나눔 활동

사업유형	사업내용
노인 안전예방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 관리 활동
상담 안내	노인상담, 학대예방, 인권지킴 활동, 안내(박물관,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 복지서비스 등)
학습 지도	교육 및 학습 지도 활동
문화예술	음악회, 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
기타	활동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

02_재능나눔활동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 운영기간 : 6개월
※ 최대 활동비 범위 내에서 탄력 운영(6~9개월)가능
- 활동시간 : 월 10시간 이상, 월 4회 이상 (일 최대 3시간)
- 활동비 : 월 10만원 이내
- 활동기관 :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

02_재능나눔활동

○ 선발기준

	구 분	배점
관련경력활동	활동경력 5년 이상 (40점)	40점
	활동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20점)	
	활동경력 1년 미만 (10점)	
	활동경력 없음 (0점)	
관련자격보유	관련분야 국가자격 보유 (30점)	30점
	관련분야 민간자격 보유 (20점)	
	관련분야 교육수료 (10점)	
	관련분야 자격 없음 (0점)	
기초연금 수급여부	기초연금 미수급(20점)	20점
	기초연금 12만5천원 이하 수급(10점)	
	기초연금수급(0점)	
담당자 의견	참여적극성(5점)	10점
	건강상태 등 활동능력(5점)	

02_재능나눔활동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2018년 부정수급자

02_재능나눔활동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공공시설 안내사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방문한 노인 대상 이용시설 안내 활동
학습지도사	노인 대상 한글교실 운영 등 교육 및 학습지도 활동
연필 인물화	연필 인물화에 소질이 있는 노인들이 지역 내 어린이집 등 원아들의 그림을 그려서 이를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 노인의 재능 활용
문화예술사	하모니카 연주, 인형극단 등 문화예술 재능 활용



< 마술 공연 >



< 동화구연 >

03_사회서비스형

- 정의 : 취약계층 지원 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유형	사업내용
아동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보육시설 등 지원
청소년시설지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 관련시설, 특수학교 등 지원
취약가정시설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
노인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원(경로당 제외)
기타시설지원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등 지원

03_사회서비스형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시니어 컨설턴트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특정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 운영기간 : 최소 10개월
- 근무시간 : 월 최소 60~66시간 범위내
※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 6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장 및 휴일근로 불가
- 인 건 비 : 월 최대 59.4만원(시간당 9천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1인당 연1,458천원) 별도 지급
- 수행기관 :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03_사회서비스형

○ 선발기준

구 분		배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소득(35점)	35점
	부부가구 소득(35점)	
중도포기경험	노인일자리 사업 중도포기 여부	10점
세대구성	경제력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15점)	15점
	독거노인가구(10점)	
	부부노인가구(2명) (5점)	
	경제력 있는 가족 동거(0점)	
활동역량	보행능력(15점)	30점
	의사소통(15점)	
적합성	수행기관의 적합성 판단	10점

03_사회서비스형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03_사회서비스형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청소년 시설도우미	관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시설 내 환경정리 및 시설관리
장애인 서포터즈	장애인 시설 내 대상자 보조 프로그램, 시설운영 관리 지원
노인보호 전문기관지원	노인요양기관 등 식사보조, 위생관리 등 요양보호사 업무 지원
시니어컨설턴트	개발원 지역본부 및 인력파견형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업무 또는 인력파견형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 장애인 시설 지원 >



< 노인보호기관 지원 >

04_시장형사업단

- 정의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사업내용
공동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지역 영농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서비스제공형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형

04_시장형사업단

- 참여자격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운영기간 : 연중운영
※ 서비스제공형 사업은 9개월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
- 근무시간 :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 인 건 비 :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급여기준에 따름
※ 근로계약 시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19년 8,350원) 이상
- 수행기관 :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

04_시장형사업단

○ 선발기준

구 분		배점
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0점)	30점
	관련 경력 (0~10년) (0~25점)	
세대구성	경제력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20점)	20점
	독거노인가구(15점)	
	부부노인가구(2명) (10점)	
	경제력 있는 가족 동거(0점)	
공적 지원 수급여부	기초연금수급여부 (10~20점)	20점
	기초연금 미수급 (0점)	
	차상위계층 자격(20점)	
종합의견	참여 적극성 (10점)	30점
	건강상태 및 수행능력 (20점)	

04_시장형사업단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 참여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04_시장형사업단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클린토이	어린이집, 유치원, 개인가정 등 장난감 세척 서비스로 아동 질환 예방
시니어 공동작업장	노인정 등 일정공간을 활용하여, 쇼핑백, 포장지 등 수공업 업무
그린에코작업장	폐현수막을 활용해 마대, 에코백 등을 생산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바구 자전거	전자자전거에 관광객을 태워 부산 동구 이바구길의 숨은 역사와 문화 전달
유니콘 택배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물류 서비스 제공
쌩쌩클린	일반 가정에 방문하여 세탁기, 에어컨 필터 등 클리닝 서비스 제공



< 실버 카페 >



< 실버 택배 >

05_인력파견형사업단

- 정의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직종분류	사업내용
관리사무종사자	경영, 영업, 판매 및 운송관련 관리자, 기타 사무직 등
공공/전문직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 기타 전문직
서비스종사자	예식 및 보건·의료 서비스, 운송 및 여가 서비스, 조리 및 음식서비스, 배달원
판매종사자	계산원 및 매표원, 판매원 및 판매 단순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농림 어업 작물재배 조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종사자, 기타 기능 관련직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기타

05_인력파견형사업단

- 참여자격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운영기간 : 연중운영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인 건 비 : 근로계약서로 정한 급여기준에 따름
※ 근로계약시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19년 8,350원) 이상
- 참여방법 :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지회 등 수행기관에 구직신청서 작성 및 제출

05_인력파견형사업단

- 선발기준 : 참여자격 충족 시 별도의 선발기준 없음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05_인력파견형사업단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시험감독관	공무원 임용시험(인사혁신처), 민간자격시험(동부화재) 등 시험감독 보조
LH시니어사원	LH 임대주택단지 내 환경개선, 케어서비스 제공 등
시니어경비원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순찰 등 시설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농어촌 일손도우미	농어촌 지역의 생산품 수확 및 가공, 포장 등 관련 업무 수행



< 시험감독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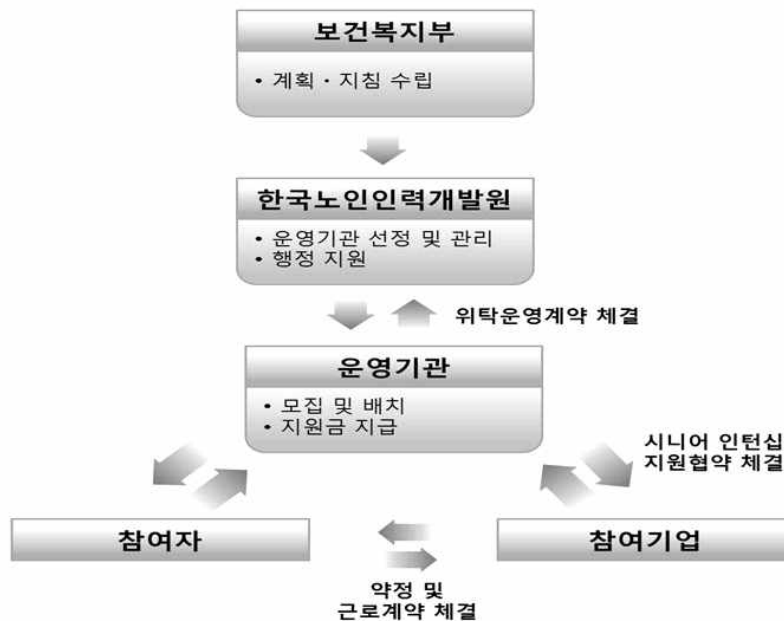
< 경비/시설관리 >

06_시니어인턴십

- 정의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 월급여의 50%를 약정기간(최대 3개월) 동안 지원
 - 일반형 : 최고 월 30만원
 - 전략직종형 : 최고 월 40만원
 - 채용성과금 : 약정기간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 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월급여 50% 지원
 - 일반형 : 최고 월 30만원
 - 전략직종형 : 최고 월 40만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90만원 지원

06_시니어인턴십

○ 추진체계



06_시니어인턴십

- 참여자격 : 만 60세 이상
- 근무조건 : 기업별 근로계약에 따름
- 참여방법 : 전국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 대표번호(1577-1923)연결 시, 발신처에서 가장 가까운 운영기관으로 연결
- 참여제외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참여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당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인 자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직계인척 등 혈족 관계인 자

06_시니어인턴십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편의점 캐셔	GS, CU, 이마트24 등 매장 상품 진열 및 계산 등 업무 수행
푸드서비스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본죽, CJ프레시웨이 등 구내 식당에서 급식 조리 업무 수행
전통한옥관리원	종택 및 고택을 활용한 한옥체험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 수행
쇼핑몰 매니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사진 편집 및 게시, 고객 상담 등 업무 수행
시니어 크루	선박 항해사, 승무원, 선박 수리 업무 수행



< 편의점 캐셔 >



< 시니어 호텔리어 >

07_고령자친화기업

- 정의 :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설립자금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직종분류	지원대상	지원규모
기업인증형 (지정)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개소당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개소당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숙련된 기술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	개소당 3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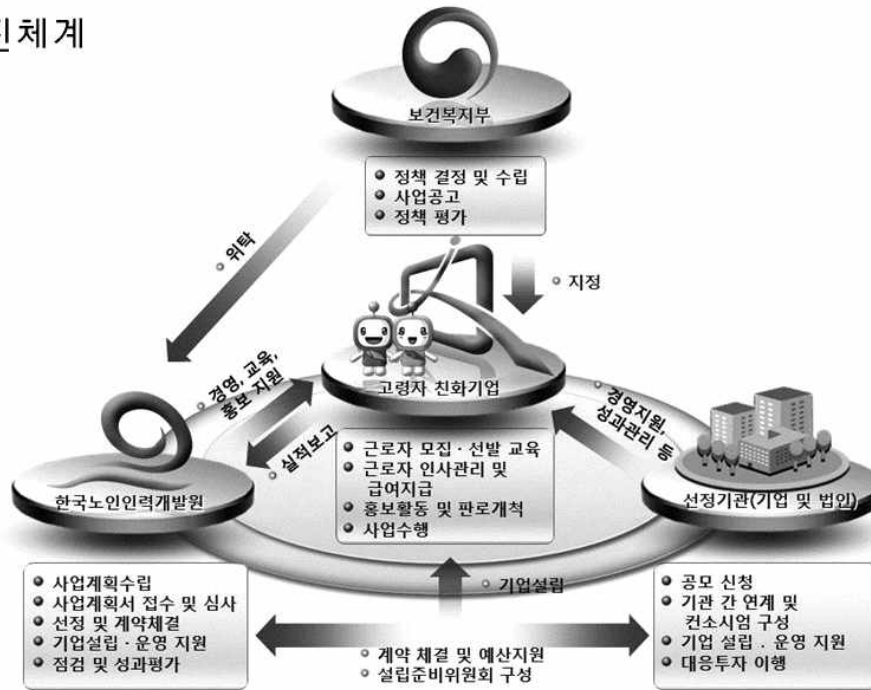
07_고령자친화기업

- 정의 :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설립자금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직종분류	지원대상	지원규모
기업인증형 (지정)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개소당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개소당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숙련된 기술 및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	개소당 3억원 이내

07_고령자친화기업

○ 추진 체계



07_고령자친화기업

- 참여자격 : 만 60세 이상
- 근무시간 : 기업별 근로계약에 따름
- 인 건 비 : 기업별 근로계약에 따름
- 참여방법 : 해당지역 고령자친화기업에 문의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go.kr)에서 확인 가능
- 채용불가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 당해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 ※ 단, 참여종료 후 채용 가능
 - ※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인력파견형 및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단, 기존 직장 사직 후 채용가능

07_고령자친화기업

○ 대표사례

기업명	사업내용
동작구어르신행복 주식회사	서울시 동작구가 100% 출자해 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시니어 일자리 전문회사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주택 등 민간시설 클리닝 서비스,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시행
(유)새참수레	공동농장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할머니 요리사들이 직접 두부, 청국장, 김치 등 50여종의 음식을 만들어 운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뷔페 운영
(주)삼정	의료기기 소모품 제조, 관련부품 사출 등 사업추진,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 분야에 어르신 일자리 제공
(주)할머니손맛	기존 시장형사업단에서 자립한 유형으로, 공공급식 반찬 납품, 할머니 손맛 도시락 및 판매 등 추진



< 건축/인테리어 >



< 제과/제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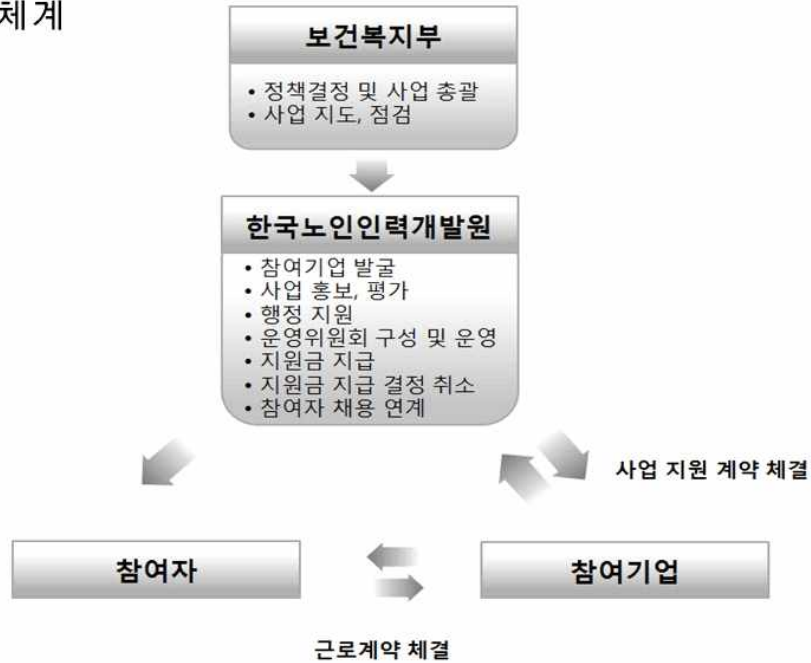
08_기업연계형

- 정의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50만원 지원

유형	지원대상	지원한도
세대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형)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 (재고용형)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 해당기업에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되어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 (기술유지형) 일시적 기술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이 해당업종 관련 15년 이상 근무한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 	1인당 최대 250만원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1인당 200만원 (최대 250만원)

08_기업연계형

○ 추진 체계



08_기업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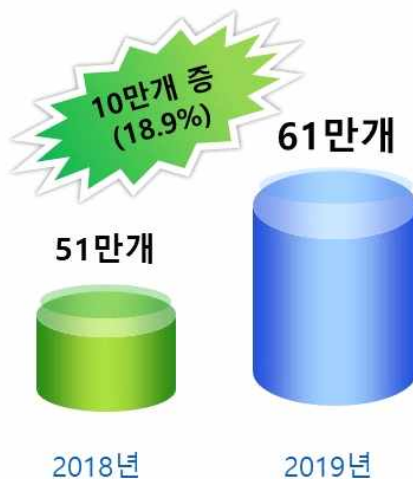
- 참여자격 : 만 60세 이상
- 근무시간 : 기업별 근로계약에 따름
- 인 건 비 : 기업별 근로계약에 따름
- 안내방법 : 기업관계자인 경우 해당 지역본부 담당자와 논의
- 참여제외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참여 중인 자
 - 사업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당해연도 해당 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
 - 참여 당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인 자
 -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직계인척 등 혈족 관계인 자

08_기업연계형

○ 대표사례

구분	사업내용
자동차검사대행원 (주)모터엠에이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검사 대행업무를 수탁,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1인 도급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전환
건설안전관리원 (주)다인맨파워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이 있는 퇴직자가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특수기계운전원 (주)KT&G	담배 원료 배합 및 담배 생산 특수 기계 운전 등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60세 이상자를 재고용하여 전국공장에 배치 및 기술 전수
KT컨설턴트 (주)KT	KT선로 현장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재고용하여, 전화선로 현장, 교환기 운영 등 현장에 배치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도자기 명장 (한국도자기주)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전문기업인 한국도자기(주)의 가마불 관리 및 전사지 칼라구현 기술 명장을 고용하여 전통 공예 기술 전수

2019년 사업유형별 사업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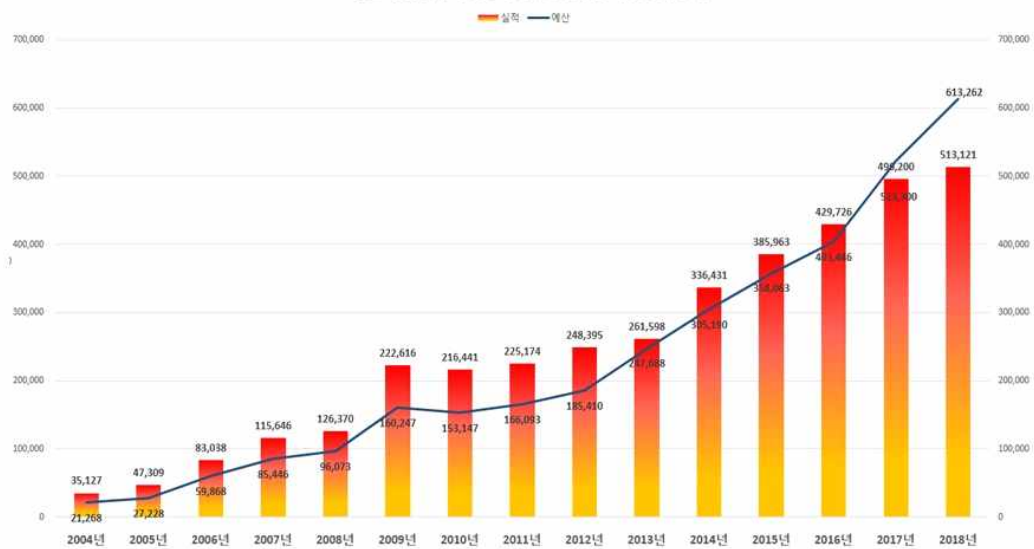
공익활동	441천개(72.2%)
사회서비스형	20천개(3.3%)
재능나눔활동	47천개(7.7%)
시장형사업단	60천개(9.8%)
인력파견형사업단	27천개(4.4%)
시니어인턴십	9천개(1.5%)
기업연계형	5천개(0.8%)
고령자친화기업	2천개(0.3%)

* '19년 정부안 기준

추진 성과 및 한계

사업실적 및 예산변화 추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적 및 예산 변화 추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효과

○ 추진효과

경제적 효과

- 노인일자리 참여 후 전체 가구 빈곤율 약 14.7% 감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에 기여

의료비 절감 효과

- 개인적 효과 : 연 546천원 절감 (서울대산학협력)
- 사회적효과 : 연 7,308억원 절감 (2009~2013년 누계)

효과

생활패턴 변화

- 유급노동시간 증가 (1일 18~24%)
- 신문, TV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 축소

사회관계 및 심리개선

- 각종 단체, 종교, 여가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 확대
- 노인의 우울 등 심리가 긍정적으로 개선

문제점 및 한계

○ 문제점 및 한계

수요 대비 공급 부족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노인은 전체노인의 16.2%
* 2017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인용
-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충족률 42.9%
* 사업량 513,121개 / 희망노인 1,195,643명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최저임금 인상,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시장형사업 등 사업비 지원 단가 인상 필요
- 전담인력 업무부담 완화 필요

한계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필요

- 지역환경개선사업 등 단순 근로형 활동의 비중 증가
- 노인 특성에 적합하고 사회적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 공급 필요

법적, 제도적 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사업 내실화 필요
- 제도적 변화에 따른 지침 반영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유형	지원형태	핵심정책	정책목표	국가
저소득 노인 지원형	직접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사업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한국
	고용서비스 및 훈련	SCSEP	민간 일자리로 이행	미국
	사회참여(일자리, 자원봉사, 교육)	실버인재센터	사회참여	일본
조기퇴직 완화형	직접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감면, 임금 보조, 고용지원 등 적극적 지원	고용창출사업, 일자리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일자리로 이행	독일
		고용지원계약제도(고용주도계약, 고용동반계약)		프랑스
완전고용 지원형	공공부문 임시직 일자리, 특별고용보조금	-	-	스웨덴

자료) 지은정(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사회복지연구 44(3), 177~206

SCSEP과 실버인재센터 참여자의 지위와 사회적 보호

구분	SCSEP	실버인재센터
참여대상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60세 이상(소득 무관)
보수	시간당 최저임금	월 3~5만 엔
참여기간	주당 평균 18~22시간	월 8~10일
참여자 신분	피고용인 X, 훈련인	사회참여자
사업성격	일자리 보장사업 X, 훈련프로그램	근로일수, 일정수입 보장 X
사회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 수급자격 X - 연금, 퇴직급여 수급자격 X - 연차휴가, 유급휴가, 병가수당 X - 상해보험과 건강검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관계성립 X - 노동관계법 X, 사회보험 X - 손해보험 가입

자료) 지은정(2015),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보험 적용과제와 해외 유사정책의 시사점",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3), 89~124

!감사합니다!

〈토 론 문〉

서울의 노인일자리 실태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보완 방안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서울의 노인일자리 실태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보완 방안

김 정 현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발표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본 토론문은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¹⁾ 결과와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²⁾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현황을 담고자 한다.

1.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근로활동 관련 특성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5.1%로, 2016년 조사 결과보다 2.6%p 증가하였다. 65세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 마련(74.1%)과 용돈 마련(13.6%) 등으로, 노년기 소득 활동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주당 평균 5.2일, 43.1시간으로 일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는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38.8%), 임시직(25.5%), 일용직(16.4%), 상용직(10.2%), 종업원 있는 고용주(5.9%), 무급가족종사자(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 중인 직업은 단순노무(34.4%), 판매직(25.8%), 서비스직(25.1%)이 주를 이룬다. 이는 2016년과 유사한 결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 노인의 종사상 지위나 직종은 여전히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응답자 1,064명 중 38.4%는 현재 종사하는 곳에서 20년 이상 일하여 왔으며, 40년 이상일해 왔다는 응답도 12.5%에 달하였다. 노년기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절반 가까이는 일생에 걸쳐 하던 일을 노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3.6만원으로, 2016년 128.5만원에 비해 25.1만원

- 1)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어 왔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서울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생활환경, 일자리, 여가·문화, 존중과 보호, 돌봄 등 노년기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100세누리 포털은 노년층에게 일자리, 교육, 노후생활, 복지정책 등 노년기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증가하였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가 횡단조사이기는 하지만, 2016년과 2018년 표본 추출 방법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 응답자의 근로소득이 월평균 25.1만원 증가한 것은 상당히 큰 변화이다.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월평균 근로소득 상승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 격차가 커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용주 및 자영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16년 대비 약 42만원 증가하였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액은 6만원에 그친 것이다.

취업 관련 경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5.5, 2,571명)은 60세 이후 취업을 시도하였다고 답하였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60세 이후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밖에 지인, 민간기관, 정보검색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571명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중복 응답)으로 낮은 급여(54.6%), 나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28.1%), 열악한 근로 조건(18.8%), 노동 강도(13.6%) 등을 꼽았다. 노후에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만큼, 노년기 낮은 급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터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노인 당사자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10명 중 6.3명(62.9%)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응답률은 노년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것 보다는,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 중 고령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일수록 신체적 기능은 떨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 서울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2018년 기준 서울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 수는 1,033개이며, 모집계획인원은 60,204명이다. 그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의 사업 수(778개, 75.3%)와 모집계획인원(48,834명, 81.1%)이 압도적이다(표 1 참고). 특히 공공시설봉사에 해당하는 사업 수와 모집계획인원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단순 봉사 또는 청소 등의 활동에 사업 수와 모집계획인원이 집중되어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나눔의 사업 수는 92개로 전체의 8.9%에 불과하며, 모

집계확인원 또한 4,500여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시장형 사업단의 사업 수는 전체 지원 사업 수의 15.8%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 대비 모집계확인원의 평균 비율은 공익활동 8.1%, 재능나눔 0.4%, 시장형 0.3%이며, 활동 유형과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의 경우 자치구별 대상인구 대비 모집계확인원의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은 25개 자치구 평균을 표준편차 이상으로 웃돈 반면,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강서구 등의 대상인구 대비 공익활동 모집계확인원은 5%에 미치지 못한다(표 2 참고).

표 1. 서울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계	노인사회활동[봉사]		노인일자리[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사업 수	1,033 (100.0)	778(75.3)	92(8.9)	163(15.8)
모집 계확인원	60,204 (100.0)	48,834(81.1)	4,548(7.6)	6,822(11.3)
대상 및 지원액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1인당 월 27만원 지원 · 9개월 활동 시 총243만원 · 12개월 활동 시 총324만원 (부대경비 연14만원별도)	· 만65세 이상 대상 · 1인당 월 54~60만원 지원 (부대경비 연2~8만원별도)	· 만60세 이상 대상 · 1인당 연간210만원 지원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www.100seuniri.go.kr)」

표 2. 자치구 단위 대상자 대비 모집계확인원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노인사회활동[봉사]		노인일자리[근로]
	공익활동	재능나눔	시장형
상위 자치구	중구: 18.8 종로: 16.7 영등포: 12.7 마포: 12.3	동작, 성동: 0.8 종로: 0.7 구로: 0.6	노원, 도봉: 0.9 서초: 0.8 종로: 0.7
하위 자치구	강동: 2.8 송파: 3.4 중랑: 3.5 강서: 4.2	강남, 강서, 노원,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0.1	강동: 0.0 강서, 금천, 서대문, 성동, 중랑, 용산: 0.1
서울시 전체 평균	8.1(표준편차3.97)	0.4(표준편차0.38)	0.3(표준편차0.25)

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현황은 2018년 기준이며, 사업별 대상자 현황은 2016년 말 기준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0세누리 시니어사회활동포털(www.100seuniri.go.kr)」

서울특별시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

본 결과, 65세 이상 서울시민이 일하는 모습은 대체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일을 하더라도 단순 노무 등 노동 강도는 세지만 치우가 열악한 직종에 몸담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노인 일자리 직종 발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기능 저하와 환경 적응의 어려움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년기에 갑자기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 수준이나 업무 환경 등을 당장 파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지방정부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물리적 접근성과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보장한 노일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 론 문〉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

박정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

박 정 우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요약)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권익보호가 제도적으로 고려되진 않고 있다. 노인은 신체·정신·사회·정보적으로 취약하여 노동권 침해가능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노동권익 침해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노인에게 일자리의 질, 심리정서, 건강,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본 토론문은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확대될 것이란 가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동복지사업 간 연계가능한 영역을 탐색한다. 결과적으로,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은 노동교육사업, 노동상담, 분쟁조정·화해지원, 노무법률전문가 자문, 조직화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복지사업은 일자리훈련, 대변단체조직 지원, 일자리배치 이후의 노동권 침해, 고용주의 노동법 상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의 연계는 노사 간 갈등 완화를 통해 노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주고, 노인의 노동 감수성 증대와 옹호 집단 형성을 통해 노인의 노동시장참여 및 사회활동참여 주체성과 적극성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동권 침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동복지사업이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요한 연계 대상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성과 근로자성 명확화에 대한 이슈

-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성과 근로자성 명확화는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 고찰에서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본 사업이 사회활동, 즉, (근로연계) 복지 및 여가·사회참여 정책으로 진행된다면, 노동복지사업의 연계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임. 반면,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노인을 노동자로 보는 사업 방향이 부각된다면, 노동복지사업의 연계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관계부처의 결정, 관련 선행연구들, 당사자들의 높은 근로의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추세 등을 살펴볼 때, 향후 노인일자리는 노동시장정책적 성격이 강화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 (관계부처의 결정) 근로자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관계법을 근거로 노인 참여자를 상시근로자로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하자, 사업 수행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원시연, 2015)

〈표-1〉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목표와 실적³⁾

(단위: 개)

구분	목표	실적 ²⁾	노인사회활동		노인일자리(시장형)				
			공익활동 ³⁾	재능나눔	시장형 사업단 ³⁾	인력파견 형사업단	시니어 인터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직능클럽 ⁴⁾
2004 ¹⁾	25,000	35,127	32,173	-	1,748	1,206	-	-	-
2005	35,000	47,309	42,745	-	3,633	931	-	-	-
2006	80,000	83,038	73,712	-	7,459	1,867	-	-	-
2007 ¹⁾	110,000	115,646	103,415	-	9,630	2,601	-	-	-
2008	117,000	126,370	110,389	-	11,530	4,451	-	-	-
2009	196,000	222,616	195,798	-	17,757	9,061	-	-	-
2010	189,183	216,441	191,676	-	15,984	8,781	-	-	-
2011	200,000	225,174	194,480	-	15,486	10,380	3,643	913	272
2012	220,000	248,395	217,710	-	16,190	9,349	3,612	1,126	408
2013	240,000	261,598	227,439	-	17,685	10,397	4,500	1,118	459
2014	310,000	336,431	269,244	30,609	19,764	10,514	5,103	721	476
2015	370,000	385,963	305,140	40,847	22,889	9,730	6,176	716	465
2016	418,900	429,726	290,625	40,163	77,734	12,557	6,730	1,545	372

주 : 1) 2004년 '공공참여형'은 '공익형', '공익강사형'은 '교육형', '시장참여형'은 '시장형'으로 분류. 2007년 '통합형'은 성격상 '초기투자비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분류. '지역혁신사업'은 복지형 성격(노-노케어)로 운영되었으므로 '복지형'으로 분류
 2) 창출실적 : 실참여기간을 9개월로 환산하여 추정된 자리수. 2015년 이후 창출실적은 공익활동 누적참여 인원-공익활동 중도포기자 /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실참여인원으로 산출.
 3) 2016년 '공익활동(전국형, 지역형)'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으로 구분. '지역형(공익형)'사업 중 근로자성이 존재하는 공익활동 8개 사업(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CCTV 상시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 및 수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은 공익활동에서 제외.
 4) 2016년 '시니어직능클럽'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분류.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년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선행연구들의 정책제언) 이재원 외(2017)와 박경하 외(2016)은 노인일자리를 근로자성 강화와 민간일자리 확대와 수행기구의 책임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사업 추세와 당사자들의 근로의지)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형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또한, 한국 고령자는 노동시장참여율이 60%로 높아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보이고 있고,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함.

3) 이인재 외(2017)에서 재인용

2. 노인일자리 중 노동시장정책 방향이 확대된다면? 노인의 노동권은?

- 노인일자리 중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정책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의 노동권익이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함.
- 노동권 옹호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되어 노인의 노동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 사업에서 노동권 침해 노인이 발생했다는 사회적·정치적 비난과 논쟁이 생길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노인의일자리 사업 체계에서 노동권을 옹호해주는 기제 부재함.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선 노무관리메뉴얼을 발간하였고, 노인인력개발원 산하의 성장지원센터에서도 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주 및 사업장을 위한 것이고, 고령 노동자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님.
- 사회적으로 노인의 노동시장참여를 독려한다면, 노인에 대한 노동권 관리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봄. 노인은 상대적으로 신체적·정신적·지적·사회적·제도적으로 일반 성인보다 취약하기 때문임.
- 서울시통합노동상담DB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익 취약성이 확인됨. 서울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에서 50대의 노동상담 비율이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도 19.2%로 낮지 않은 비율로 나타남.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임.

〈표-2〉 서울시통합노동상담 연령별 비율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비율	0.9	13.9	21.6	21.0	23.4	15.9	3.3

- 또한, 노인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담과 교육 실제 사례도 존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법률 상담 사례〉

실제 사례1.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만65세 이상 근로자 채용 예정 1.이 경우 기관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2.주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문의

실제 사례2. (고령 근로자)

매일 8시~8시 50분까지 학교 앞 소로에서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이나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3. (고령 근로자의 가족)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봉사중 2017년 1월 경 뇌출혈 발병 투병중이다. 산재가 가능한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노동법 교육 사례〉

〈교육강사〉

- 교육대상자 특성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 부족했지만, 산재보험법에 대한 흥미도 높았음.

- 수업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맞게 뇌심혈관계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에 초점 맞추어 진행. 어르신 대상이라 가급적 사례중심으로 강의함.

1시간 강의 짧았음. 최소 2시간 이상 배정이 실질적인 교육효과 있을 것

〈교육대상 노인〉

- 강의 의견

출퇴근 재해에 대한 내용 유용하였음

다만, 문자해독이 어려운 교육대상자가 보기에 어려웠음.

3.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노동복지사업

- 1) 노동교육 : 일하는 시민을 위해 노동법과 노동인문학 맞춤형 무료 교육
- 2) 캠페인 : 노동자권익이 보호되는 서울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
- 3) 노동상담 : 공인노무사가 상시적·밀착형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 4) 분쟁조정·화해지원 : 법적 쟁송 진행 전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조정 지원
- 5) 법률전문가 자문 : 노동인권단체, 법률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인권네트워크 운영
- 6) 조직화공모지원 : 조직된 노동단체 재정 지원

4. 서울의 노동복지사업 수행조직의 현황

- 2019년 현재 12개의 자치구 설치. 2021년까지 25개구 모두 설치 될 것. 접근성 더욱 향상될 것.
- 각 센터별로 노무사 1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음.
- 향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자치구 간 조율 및 모델 확산 역할을 할 예정
- 2021년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직이 설치되고 허브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서울 모든 권역에서 노동복지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지역별 접근성도 제고될 것

5.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 본 토론문은 고령자 취업지원사업이 노동교육사업, 노동상담, 분쟁조정·화해지원, 노무법률전문가 자문, 조직화공모사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즉, 노동복지사업은 일자리훈련, 대변단체조직 지원, 일자리배치 이후의 노동권 침해, 고용주의 노동법 상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직업훈련시,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 진행하여,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익 감수성 증대 (낮은 문자해독 능력, 산재에 대한 염려, 근골격계질환 등) 향후 근로자성 논의와 노인일자리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EITC, 두루누리, 임금보조 등) 간 관계가 법·제도적으로 명확해진다면 제도 교육도 가능
- 직업연계 후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명백히 발생하였을 시, 전문적 권리구제 및 노무 상담 연계
- 고령 노동자의 옹호집단 형성 시,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건비 지원, 행정, 노무 상담 지원
- 모든 사업에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1차 직접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자치구 조직들 간 계획, 조정 및 모델 확산 지원
- 개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직업훈련사업과 직업연계사업 간 유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직업훈련사업과 직업연계사업이 더 긴밀히 설계된다면, 노동복지사업과

의 연계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동권 침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동복지사업은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직업훈련에서부터 배치 이후의 단계까지 중요한 연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6. 노동복지사업 연계가능성로 인한 기대효과

- 노사 간 갈등 완화를 통해, 노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 노인의 노동 감수성 증대와 옹호 집단 형성을 통해, 노인의 노동시장참여 및 사회활동참여 주체성과 적극성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성과 질 향상

〈참고문헌〉

- 지은정(2013).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사회복지연구 44(3). pp.177-206
- 원시연(2015).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1040호. 국회입법조사처
- 이재원 외(2017).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박경하 외 (2016), 「60+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별첨-1> - 강사 작성

2018년 서울노동아카데미 <내:일채움> 과정

교육평가서

1. 교육개요

강사성명	-	소속	-
교육일정	7월 5일 오전 11시 -12시	교육인원	129명
교육대상	<input type="checkbox"/> 성인 일반		
교육장소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3층 강당		
교육주제	<input type="checkbox"/> 일하다 다쳤을 땐?		

2. 교육결과

교육대상특성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초등학교 공공봉사로서 등하교시간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또는 공공시설봉사(교내청소) 일자리사업(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요원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바, 산재보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부족하였지만, 산재보험법의 보상내용에 대하여 흥미도가 높았으며, 만65세 이상의 연령대임을 감안할 때 교육 참여도 및 교육 몰입도는 매우 높았음.
수업 주요내용 및 주요 질문	산재보험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요건 및 보상내용에 대하여 강의 를하면서,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맞게 뇌심혈관계질병 및 근골격계질 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기자재 상태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컴퓨터(노트북) <input type="checkbox"/> 마이크 <input type="checkbox"/> 화이트보드(칠판)
	이상없음

<p>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p>	<p>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서 가급적 많은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1시간이라는 짧은 강의 시간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대상이라도 사례중심강의를 하면 몰입도도 높아, 최소 2시간의 강의시간 배정이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	--

교육평가서

1. 교육개요

신청기관	-	담당자	-
분류	<input type="checkbox"/> 성인 일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교육대상	공공일자리참여자		
교육일시	7월 5일 오전 11시		
교육장소	(사)대한노인회양천구지회 3층 강당		
취합설문지	129 부	참석인원	129 명
교육주제	<input type="checkbox"/> 취업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상식 <input type="checkbox"/>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쉴 수 있을까? <input type="checkbox"/> 내 노동의 가치, 임금 계산하는 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하다 다쳤을 땐? <input type="checkbox"/> 행복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한 기본 에티켓 <input type="checkbox"/> 똑똑한 퇴직과 재취업 <input type="checkbox"/> 소통의 출발, 노동조합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2. 교육평가

강의평가	8
의견 및 건의사항	<p>강사님께 교육대상자의 연령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해주시길 요청 드렸었는데, 시간 내에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알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p> <p>강사님께서 설명하기에 앞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셨고, 어르</p>

신들은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고민하시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새로 바뀐 내용인 '출퇴근 재해'에 대한 내용은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다만, 문자해독이 어려운 본 교육대상자가 보기에는 교육자료(PPT)의 대부분이 글로 되어있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3. 교육 사진



※ 발표문에 대한 질의

(1) 2016년 이후 사업 명칭 변화의 의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명칭의 변화가 계속 발생하였음. 2004~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16~현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었음. 이와 같은 사업 명칭의 지속적인 변화는 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명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봄.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모색을 끊임없이 제기해옴. 그리고 아직까지 이 문제제기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그렇다면, 2016년 이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명칭된 것은 사업성격이 분화된 것인지?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노인일자리와 “(근로연계)복지정책 및 사회·여가활동 정책”으로서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그 정책성이 명확히 이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향후 조직과 예산 분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또한, 이 두 사업의 사업유기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진 않을지(연령별, 소득수준별 등)?

(2)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의 노사관계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사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의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인가?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수행기관과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인가? 인력파견형사업의 경우, 파견한 기업과 참여노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 저소득 근로자 정책들(EITC, 두루누리, 고용보조금 등) 간 연계는 가능한가?

MEMO

MEMO

MEMO

MEMO